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96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민병덕 · 정진욱 · 정태호
이강일 · 박민규 · 김 윤
김문수 · 이수진 · 박홍배
송영길 · 김한규 · 이주희
김용만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4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2조제7호아목”을 “제2조제7호자목”으로 한다.

11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44조와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속 보험설계사(「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보험설계사 및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제4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상품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 설></u>	마. 「보험업법」 제2조제10
	<u>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u>
	<u>문회사</u>
<u>마.</u> ~ <u>아.</u> (생 략)	<u>바.</u> ~ <u>자.</u> (현행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 판매업등(금융상품 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 ----- ----- ----- -----. ----- ----- ----- -----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15. (생략)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 -----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12. ~ 15. (현행과 같음) 16. 제2조제7호자목----- ----- -----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특례) ① 보험
--	--

판매회사(「보험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속 보험설계사(「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판매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보험설계사 및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에 대한 보험판매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제4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

큰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한 보
험판매전문회사 또는 해당 보
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상품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중 어느 하나
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제
한되지 아니한다.